

‘남북관계 태동기’ 이후(1970년~) 북한법 연구의 성찰과 과제*

최은석(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서론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남북관계 태동기’¹⁾인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북한법에 대한 각 분야별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통일대비 법제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어떠한 연구성과물이 나왔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 본고는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통일부 창설 이후 법제도부문 통일대비 연구의 성과와 과제”의 일부분을 다시 보완·정리한 것이다.

1) 김형기는 6·25 이후 남북관계를 ‘폐색기’, ‘태동기’, ‘정립기’, ‘화해협력 모색기’, ‘화해협력 진입기’, ‘조정기’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참조. 본 논문에서는 2단계인 태동기 이후를 연구 범위 기간으로 하였다.

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연구해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시대적인 과업이 되고 있다.

그간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비로소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분단국이었던 독일과 예멘의 통일을 계기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법에 관한 연구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남북한 통일대비 법제도 부문의 연구는 북한법 연구와 통일법 연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논하기로 한다.

첫째, 북한법 연구는 국토통일원(현 통일부)이 발족(1969.3.1)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우리에게 있어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연구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온 영역이었으나 근자에 와서 비교적 북한법 연구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북한법 연구는 통일법 연구와 연계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북한법 연구를 함에 있어 동서독과 예멘의 법제연구가 참고가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통일과정 및 완성단계에서 법적 동화 내지 통합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였으며, 결국 법적 통합 작업의 완료에 의하여 통일을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통일대비를 위한 법제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법 연구는 선행연구 과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법 연구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법제와 남북한 통일에 관한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법제교류협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게 된다. 북한 법과 통일법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통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적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반면 정치·경제·사회적 연구에 비하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미미하였다. 근자에 와서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법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에서 북한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²⁾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당규약과 헌법, 헌법관련법, 각 부문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관성이 있으므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간의 상호작용과 국제규범을 통해 동북아 질서가 구조화되는 과정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 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그러나 현재 통일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은 그 틀이 아직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2) 북한법 연구조사의 방법 및 범위

(1) 사회주의법의 해석학적 접근: 북한사회에 있어서 법규범의 효력

사회규범은 도덕규범(moral norms)이나 또는 법규범(legal norms)과 구별된다.³⁾ 특히 법규범은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또 부분적으로 그들의 동의와 거부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 속해 있는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법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법규범의 효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내 국가들과의 법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북한의 형법상 사형제도와 관련한 규정은 국제인권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 사회주의법의 법규범의 효력문제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사회에 사회주의법이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규명하기 위해 법 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사회와 북한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적어도 북한사회에 있어서 법규범이 사회규범으로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북한주민의 법의식과 법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연구가 될 것이다.

(2) 북한의 법률을 통해 본 북한사회의 법질서 인식

본 연구가 추진된 것은 북한법을 통해 북한사회의 법질서를 이해하고 향후 예견되는 통일법제 등을 연구·분석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3) 일반적으로 사회규범(social norms)은 수많은 관련 현상과 구별되고 있다. 사회규범은 일반 사회성원에 의해서 집행되지만, 누구에게나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사회규범은 습관이나 사적 규범과도 구별된다.

세계질서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찾고자 함이다. 따라서 우선 북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북한의 원전(법전 등)을 활용하여 북한사회의 단상을 법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⁴⁾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식문헌⁵⁾을 통해 나타난 사회주의법제의 독자성과 그 특색을 알고자 함이다. 또한 북한의 국제법관과 북한의 부문법 등에 나타난 대외적 법적 대응의 현상을 읽고자 한다. 그리고 부문법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헌법, 형법, 토지법, 민법 등 성문법령과 당의 명령·지시의 공식적 규범 등을 살필 것이며, 도덕률과 관습 및 거래관행 등 비공식적 규범을 연구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목록을 선정하는 데 이러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연구논문의 주제를 위주로 연구목록을 선정하고 내용상 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자료들을 선정하였다.⁶⁾

(3) 법사학(法史學)적·법사회학적 접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북한법 연구에 대한 시기를 먼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나누고 각 분야별·이슈별로 연

-
- 4) 이와 관련하여 북한법에 대한 초창기 종합적인 분석으로는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 북한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관해서는 장명봉, “북한의 최근 입법 동향,” 북한법연구회 편, 『북한법연구』, 제11호(2008), 303~339쪽; 장명봉, “북한의 최근 사회주의법제사업 동향,” 북한법연구회 편, 『북한법연구』, 제12호(2010), 289~369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북한의 법률과 관련한 공식문헌은 기본적으로 『민사법사전』, 『국제법사전』, 『법학사전』, 『정치용어사전』, 『주체의 법이론』, 『국가와 법의 리론』,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을 비롯해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의 신문,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학)』, 『경제연구』 등의 잡지가 활용된다.
 - 6) 여기서 찾은 북한법 연구자료에는 통일법 연구에 대한 언급도 일부 들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구성과를 조사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연구성과에 대한 동향과 분석 평가를 한다.⁷⁾

또한 본 연구는 정치·경제와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감안하여 정치·경제적 분야와 법제도적 분야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법적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치·경제 등의 영역과 법제도적 영역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되는 동태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법사회학적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⁸⁾ 연구논문의 성과물 선정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법적 접근이 이루어진 논문은 모두 선별하여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2. 북한법 연구논문의 성과와 연구분류

1) 국내에서의 북한법 연구논문의 성과

본 연구는 북한법에 대한 국내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연구논문 현황을 고찰한다.⁹⁾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DB화하고 있는 국회도

7) 본 논문에서는 다루는 범위는 논문의 분량상 부득이 북한법에 한정되어 있다. ‘남북관계 태동기’(1070년~) 이후 통일법에 대한 연구성찰과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다룰 예정이다.

8) 법사회학의 연구분야에는 ① 법원(法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살아 있는 법의 연구, ② 법의 생성과정(입법과정이나 사법과정)의 연구, ③ 법의 현실적 효과의 연구, ④ 사회가 법에 구하고 있는 요구나 법의식(法意識) 연구 등의 분야가 있다.

9) 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법제도에 집중되면서 많은 학계 및 전문가, 법조인 등이 ‘북한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회원으로서는 약 80여 명 정도가 참여하여 헌법, 헌법관련, 사법제도, 민사법, 형사법, 인권법, 경제특구법, 대외경제법, 조세법, 기상법, 지적재산권법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다.¹⁰⁾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이나 세미나 자료 등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을 뿐더러 납본의 무도 없어 제때 등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납본되지 않은 북한법 부문의 발표논문과 연구문헌도 함께 수록하여 연구실적 조사에 대해 충실성을 다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문헌 목록에 대한 조사·분석과는 차별화를 두었다. 이에 대한 <표 1> 비교현황표 자료(분석 data)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 1> 비교대상검색기관¹¹⁾과 본 연구팀의 연구문헌 검색 현황표(연구실적 건수)에서 보듯이 국회사이트에서 검색된 연구실적의 건수와 본 연구팀이 조사한 연구결과 건수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국회에서 ‘북한법’으로 검색엔진을 가동한 경우 단행본 167건, 학술지 274건, 인터넷자원 13건, 석·박사 학위논문 51건으로 모두 505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팀이 ‘북한법’으로 검색엔진¹²⁾을 가동한 경우 단행본 343건, 연구논문 895건, 석·박사 학위논문 289건으로 모두 1,527건으로 검색되었다. 참고로 위 비교대상 검색기관(국회)과 본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합하면 총 2,032건이다.

다음 조사 자료를 보면, 본 연구팀의 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검색된

10) 정부간행물이나 단행본은 ISBN으로 등록되어 국회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므로 검색엔진에서 대부분 누락되지 않는다.

11) 본 연구팀이 조사한 연구실적 건수와 대비하기 위해 각종 문헌이 비교적 잘 DB화되어 있는 정부검색기관으로 국회도서관을 비교대상기관으로 하였다.

12) 여기서 본 연구팀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무부, 법제처, 통일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각종 학회 사이트 및 발간 문헌 등을 검색하고 정부에 미납본된 기타 학술대회, 각종 세미나 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표 1> 비교대상검색기관과 본 연구팀이 검색한 비교현황표(연구실적 건수)

구분 기관	연구문헌 분류(발행기간)	건수	기관별 연구실적 그래프		
			500	1000	1500
국 회	단행본(1969~2009.10)	167	■		
	학술지(1970~2009.10)	274	■		
	인터넷자원 (2002~2009.10)	13	■		
	석·박사 학위논문 (1981~2009.10)	51	■		
	소계	505	■		
본 연구 팀	단행본(1961~2009.10)	343	■		
	연구논문 (1963~2009.10)	895	■	■	
	석·박사 학위논문 (1975~2009.10)	289	■		
	소계	1,527	■	■	■
Total		2,032			

※ 위 그래프는 국회 검색사이트(2009.10.31일 기준)와 본 연구팀¹³⁾에서 검색된 것을 Data로 그래프화한 것이다.

경우보다 북한법의 경우 약 3배 가량 많았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부기관의 연구문헌 등록의 DB화에 있어 북한법에 대한 연구실적물을 온전하게 DB화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는 연구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실적물을 비밀문서로 취급하거나 북한법 관련 학술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간물 형태로 발간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으로 납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법 연구실적물이 질적으로 평가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

13) 여기서 본 연구팀이란 ‘북한법연구회’를 지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본 연구팀이라고 칭한다.

만 양적으로도 많은 연구논문이 양산될 때 여러 방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쨌든 학계와 전문가 그룹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연구를 어느 정도 접근하여 시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식정보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위 통계는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2) 북한사회의 시대변화에 따른 국내에서의 북한법 연구논문의 분류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함께 이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에 따라 북한법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법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만큼이나 이에 대한 주장 또한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성향에 따라 그 분석 평가도 다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 연구자들 대부분은 북한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거나 어떤 입장에 목시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북한체제를 규명하는 작업이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 연구와는 달리 북한법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쟁점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진다. 하나는 북한법에 대한 인식 및 방법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자가 북한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연구자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면 후자는 북한법의 특성을 미시적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 대상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양자는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북한법’을 둘러싼 한국과 주변국들의 상호 이해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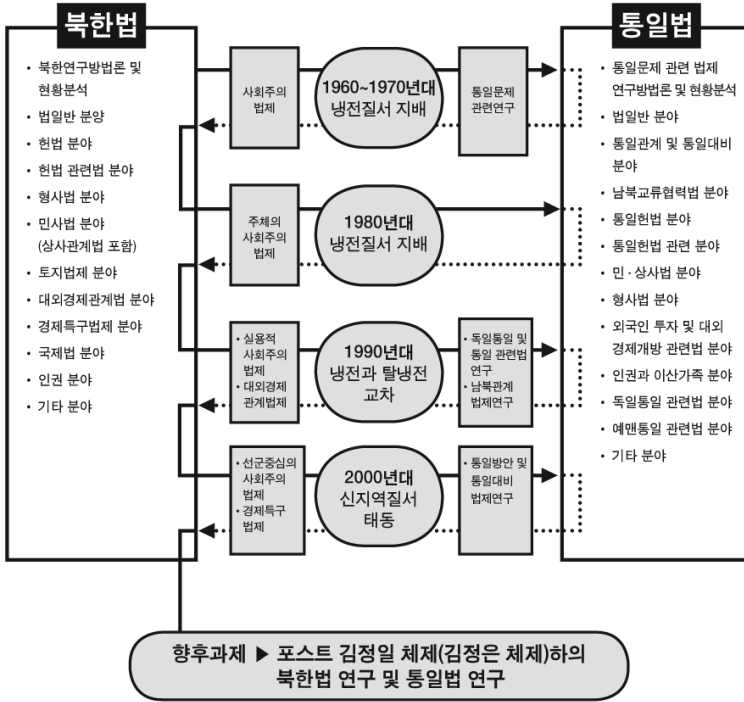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제도화되는 과정과 북한의 체제수호와의 상관성을 규명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북한법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대별로 다음과 같이 ‘북한법연구방법론 및 현황분석’, ‘법일반 분야’, ‘헌법 분야’, ‘헌법관련법 분야’, ‘형사법 분야’, ‘민사법 분야’(상사관계법 포함), ‘토지법제 분야’, ‘대외경제관계법 분야’, ‘경제특구법제 분야’, ‘국제법 분야’, ‘인권 분야’, ‘기타 분야’ 등 12개 분야로 나누었다. 그리고 향후 포스트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의 법제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그리고 이 법제는 앞으로 통일법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향후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연구목록의 배열은 연도순, 저자명, 주제명의 가나다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하였다.¹⁴⁾

북한법 연구의 분류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통일법 연구는 북한법 연구의 분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법은 북한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지역법률인 데 반해, 통일법은 남한과 북한 양자를 통합함에 있어 연구 소재가 되는 법률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의 법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4) 본 논문의 분량상 제한을 받고 있어 연구목록을 제공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다음의 경우와 같이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統一院, 1989~1996); 『통일백서, 1990~2003』(통일부 통일정책실, 1990~2003); 『독일통일백서』(통일부, 1994~2000);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1996~2003) 등 정기간행물로 매년 발행된 경우에는 처음 발간된 연도를 위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북한법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장명봉, “북한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법연구회 편, 『북한법연구』, 제5호(2002), 223~299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2> 북한사회의 시대변화에 따른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논문 분류표



앞의 분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법의 시기별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북한법의 변화 과정을 알기 위해 시기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대별하여 조사된 연구결과물의 연구실적 현황을 분석·평가함으로써 북한법에 대한 연구·고찰을 통해 북한사회의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남북한의 법제통합의 지표를 읽고 대처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¹⁵⁾

3. 북한법 연구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의 동향과 문제점

1) 북한법 연구논문의 동향

(1) 1970~1979년까지

1969년 통일부가 창설되기 이전에 『북한 15년사』,¹⁶⁾ 『북한통치기구론』,¹⁷⁾ 『朝鮮婚姻法』¹⁸⁾ 등 3건의 단행본이 이미 출간되어 북한법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통일부가 창설된 1969년 그 해에는 단행본 『북한의 각종 법령 폐지에 따른 한국법령의 보완 및 문제점과 대책』¹⁹⁾과 『북한법령연혁집(I)』²⁰⁾이 대학의 연구소 차원에서 발간되었다. 그 이듬해부터 통일부(당시 국토통일원)가 북한법에 대한 구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첫 번째 관심 주제로 『북한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²¹⁾을 발간하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 후 연구자 김기선(『南北韓 法制度의 比較分析 -南北韓 私有財産制度를 中心으로』,²²⁾ 남윤악(『北傀 첫刑事關係 法令集 整備』),²³⁾ 윤세창(『北傀 行政法規 첫 問題點과 그

15) 북한법 부문과 통일법 부문의 각기 요구되는 연구의 성격과 연구의 접근방법도 조금 다르다. 뿐만 아니라 각기 연구의 분야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위의 그림과 같이 분야별 핵심주제어가 조심씩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류는 연구목록에 나타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핵심키워드를 찾아 분석한 것이다.

16) 김창순, 『북한 15년사』(서울: 지문각, 1961).

17) 박동운, 『북한통치기구론』(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18) 이병수, 『朝鮮婚姻法』(東京: 宗文館書店, 1966).

19) 서울대 법학연구소, 『북한의 각종 법령 폐지에 따른 한국법령의 보완 및 문제점과 대책』(서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69).

20) 차낙훈·정경모, 『북한법령연혁집(I)』(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21) 國土統一院, 『북한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國土統一院, 1970).

22) 김기선, 『南北韓 法制度의 比較分析 -南北韓 私有財産制度를 中心으로』(발행처 미상, 1970).

對策』),²⁴⁾ 이영준(『北傀 첫軍事法첫研究』),²⁵⁾ 박길준(『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 및 북괴 국제 상거래법의 특징』)²⁶⁾ 등의 전문학자에 의해 북한의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상사법에 관한 남북한의 비교 분석이 시도되었다.

남한이 유신체제로 들어선 1972년에는 7·4남북공동성명이 있는 이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듯 통일부에서 『南北共同聲明과北韓의 法的地位』²⁷⁾도 발간되기도 하였다. 당시 국가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에서는 『北傀法令集』²⁸⁾을 발간하여 북한법령집을 최초로 체계화해 연구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북한법의 효시를 이룬 강구진 교수는 『北韓法の研究』²⁹⁾를 발간하였으며, 1977년과 1978년에는 강구진 교수(『北韓社會主義憲法研究』³⁰⁾)와 김철수 교수(『北韓憲法과 共產諸國의 憲法과의 異同에 관한研究』)³¹⁾가 각각 통일부 명의로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1960~1970년대 시기는 냉전질서가 지배하는 때이며 북한의 법제는 온전한 사회주의법제의 형태를 보이는 때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초기 북한연구의 방법론이 매우 중요시되었는데, 한배호(“北韓研究의 方法論 序說”),³²⁾ 안병영(“統一 및北韓 研究의 方法論 評價”)³³⁾ 등이 북한

23) 남윤악, 『北傀 첫刑事關係 法令集 整備』(국토통일원, 1970).

24) 윤세창, 『北傀 行政法規 첫 問題點과 그 對策』(국토통일원, 1970).

25) 이영준, 『北傀 첫軍事法첫研究』(발행처 미상, 1970).

26) 박길준,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 및 북괴 국제 상거래법의 특징』(국토통일원, 1971).

27) 국토통일원, 『南北共同聲明과北韓의 法的地位』(국토통일원, 1972).

28) 『北傀法令集』(중앙정보부, 1974).

29) 강구진, 『北韓法の 研究』(서울: 박영사, 1975).

30) 강구진, 『北韓 社會主義憲法 研究』(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1977).

31) 김철수, 『北韓憲法과 共產諸國의 憲法과의 異同에 관한 研究』(국토통일원, 1978).

32) 한배호, “北韓研究의 方法論 序說,” 『통일정책』, 제2권 3호(국토통일원, 1976).

연구에 있어 선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창함과 아울러 주체사상에 관해 김갑철의 논문 “北韓의 ‘主體思想’ 本質解剖”³⁴⁾이 발표되었다. 1972년 12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말미암아 헌법 분야에서도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박동운의 “北韓共産政權憲法の 制定過程과 그 性格”,³⁵⁾ 김운용의 “北韓의 憲法改正”,³⁶⁾ 박일경의 “北韓의 新憲法”,³⁷⁾ 장명봉의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의 權力構造에 관한 考察”³⁸⁾와 “Soviet憲法에 대한 概觀”³⁹⁾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법제도 분야에서는 김영휴의 논문 “北韓의 裁判制度에 관한 考察”⁴⁰⁾이 있었으며, 북한 형법에 관한 강구진 교수의 논문 “北韓刑法의 分析的 研究”⁴¹⁾도 발표되었다.

국제법 분야에도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김찬규 교수의 논문 “국제법관점에서 본 북한군사안전구역”⁴²⁾과 김명기 교수의 “북한의 경제

33) 안병영, “統一 및 北韓 研究의 方法論 評價,” 『통일정책』, 제3권 1호(평화통일연구소, 1977).

34) 김갑철, “北韓의 ‘主體思想’ 本質解剖,” 『통일정책』, 제3권 3호(평화통일연구소, 1977).

35) 박동운, “北韓共産政權憲法の 制定過程과 그 性格,” 『亞細亞研究』, 제6권 제2호(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3).

36) 김운용, “北韓의 憲法改正,” 『北韓』(北韓研究所, 1973).

37) 박일경, “北韓의 新憲法,” 國土統一院 편, 『國土統一』, 10월호(1973).

38) 장명봉,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의 權力構造에 관한 考察,” 평화통일연구소 편, 『통일정책』, 제1권 3호(1975).

39) 장명봉, “Soviet憲法에 대한 概觀” 국민대 법학연구소 편, 『법정논총』, 제1집(1978).

40) 김영휴, “北韓의 裁判制度에 관한 考察,” 『통일문제연구』(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1979).

41) 강구진, “北韓刑法의 分析的 研究,” 『北韓法律行政論叢』, 제2집(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73).

수역선언과 서해5도”⁴³⁾와 “서해5도의 법적 지위”⁴⁴⁾라는 서해5도와 관련한 최초의 논문도 찾아 볼 수 있다.

(2) 1980~1989년까지

1980년대는 냉전질서가 아직 잔존하고 있는 시기로서 북한이 이 시기에 주체사상을 법이론화하였다. 따라서 북한법은 주체의 사회주의법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80년 4월 북한은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였으며,⁴⁵⁾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제6차 당 대회)가 개막되었다. 이때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 받았으며,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1984년 9월 북한은 합영법을 채택하였는데,⁴⁶⁾ 이 법은 북한의 최초 대외경제관련 개방법제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1985년 8월 『주체사상 총서』 10권을 발간하게 된다. 그리고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보잉 707여객기(바그다드-서울)가 폭발하여 추락하게 된다. 그 후 1989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경협이 단초가 되

42) 김찬규, “국제법관점에서 본 북한군사안전구역,” 『국방연구』, 제20호(1977).

43) 김명기, “북한의 경제수역선언과 서해5도,” 『北韓』, 제69호(북한연구소, 1977).

44) 김명기, “서해5도의 법적 지위,” 『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23집(대한국제법학회, 1978).

45) 이 법은 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되었다. 그 후 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1차), 2001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4호로 수정보충(2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6) 이 법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되었다. 그 후 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4호로 수정보충(1차),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2차), 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3차), 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4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는 작업들을 계획하게 된다.

이 시기 발간된 연구문헌을 보면, 통일부에서 남북한 간의 분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론을 개발하여 『南北韓 分斷解消의 法理論』⁴⁷⁾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학자로는 장명봉 교수가 “南北韓의 法哲學·法認識의 差異와 北韓憲法の 體系的 研究”⁴⁸⁾와 “北韓憲法の 研究－憲法認識·憲法秩序·基本權·權力構造에 관한 考察”⁴⁹⁾ 문헌을 통해 남북한의 법철학과 법인식의 차이를 좁히고자 연구하였다. 정부기관인 법무부는 처음으로 1980년대에 북한법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분야별 연구저서를 내놓았다. 『北韓法 研究(I)－統治機構·司法制度』,⁵⁰⁾ 『北韓法 研究(II)－刑法』,⁵¹⁾ 『北韓法 研究(III)－刑事訴訟法』,⁵²⁾ 『北韓法 研究(IV)－民法』,⁵³⁾ 『北韓法 研究(V)－國際條約』,⁵⁴⁾ 『北韓法 研究(VI)－勞動法』⁵⁵⁾ 등이 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통치기구와 1984년 채택한 북한의 합영법에 대한 연구와 북한의 법무행정과 치안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北韓의 統治構造의 實態와 強弱點 分析”,⁵⁶⁾ “北韓의 合營企業 關係法令

47) 국토통일원, 『南北韓 分斷解消의 法理論』(국토통일원, 1981).

48) 장명봉, “南北韓의 法哲學·法認識의 差異와 北韓憲法の 體系的 研究”(통일원, 1982).

49) 장명봉, “北韓憲法の 研究－憲法認識·憲法秩序·基本權·權力構造에 관한 考察”(통일원, 1982).

50) 법무부, 『北韓法 研究(I)－統治機構·司法制度』(법무부, 1985).

51) 법무부, 『北韓法 研究(II)－刑法』(법무부, 1985).

52) 법무부, 『北韓法 研究(III)－刑事訴訟法』(법무부, 1986).

53) 법무부, 『北韓法 研究(IV)－民法』(법무부, 1987).

54) 법무부, 『北韓法 研究(V)－國際條約』(법무부, 1987).

55) 법무부, 『北韓法 研究(VI)－勞動法』(법무부, 1987).

56) 國土統一院, “北韓의 統治構造의 實態와 強弱點 分析”(國土統一院, 1986).

集”⁵⁷⁾ “北韓의 法務行政 實態와 強弱點 分析”⁵⁸⁾ “北韓의 治安行政의 實態와 強弱點 分析”⁵⁹⁾ 등이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북한노동당과 관련하여 김남식의 논문 “北韓勞動黨 第6次大會에 관한 研究”⁶⁰⁾과 북한법 40년에 대한 김동한 박사의 논문 “北韓法制 40년”⁶¹⁾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법학과 법사상에 대한 최종고 교수의 “北韓의 法學과 法思想”⁶²⁾이 있으며, 장명봉 교수의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에 관한 研究”⁶³⁾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장희 교수는 “共產主義分斷國憲法과 統一問題: 東獨憲法과 北韓憲法上 統一條項을 中心으로”⁶⁴⁾ 논문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의 분단헌법과 통일문제를 동독헌법과 북한헌법을 비교하여 통일관련 조항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도회근 교수는 “소련헌법상 법원의 지위와 기능”⁶⁵⁾ 논문을 통해 구소련의 헌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부문법과 관련하여 형법, 민법, 그리고 경제법에 관한 논문도

57) 國土統一院, “北韓의 合營企業 關係法令集”(國土統一院, 1986).

58) 國土統一院, “北韓의 法務行政 實態와 強弱點 分析”(國土統一院, 1986).

59) 國土統一院, “北韓의 治安行政의 實態와 強弱點 分析”(國土統一院, 1986).

60) 김남식, “北韓勞動黨 第6次大會에 관한 研究,” 『研究論叢』, 제4집(國際問題調查研究所, 1981).

61) 김동한, “北韓法制 40년,” 『高鳳論集』, 제4집(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

62) 최종고, “北韓의 法學과 法思想,”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63) 장명봉,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에 관한 研究,” 『省谷論叢』, 제2집(省谷學術文化財團, 1980).

64) 이장희, “共產主義分斷國憲法과 統一問題: 東獨憲法과 北韓憲法上 統一條項을 中心으로,” 『통일논총』, 제6권 2호(국토통일원, 1986).

65) 도회근, “소련헌법상 법원의 지위와 기능,”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제18권 2호(1987).

상당수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배종대의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⁶⁶⁾ 최달근의 “北韓養子法—그 分析的 研究를 중심으로”,⁶⁷⁾ 권오승의 “北韓의 經濟法”⁶⁸⁾ 논문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1990~1999년까지

1990년대는 냉전과 탈냉전이 교차하는 시기로서 북한에게도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제들을 실용적 사회주의법제의 양상을 띠게 된다. 특히 대외경제관계법제가 대거 입법되고 중국의 개혁·개방법제들이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게 된다.⁶⁹⁾ 여기서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군사부문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다소 강화하는 쪽을 방향을 선회한다. 이 무렵 대외경제관계법제들이 입법되는데, 1992년 10월 합작법을 채택하게 된다.⁷⁰⁾ 이 법은 1984년 합영법에 이은 두 번째 대외경제관련 개방법제가 탄생하게 된다. 반면 남한의 경우 1993년 7월 김영삼 대

66) 배종대,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北韓法律行政論叢』, 제7집(고려대 법학연구소, 1989).

67) 최달근, “北韓養子法—그 分析的 研究를 중심으로,” 『北韓法律行政論叢』, 제4집(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80).

68) 권오승, “北韓의 經濟法,”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69)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한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하였다.

70) 이 법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되었다. 그 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차), 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2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령이 ‘3단계 통일방안과 통일정책 3대 기조’를 천명한 때이기도 하다. 이때 북한은 1993년 10월 토지임대법을 채택하였으며,⁷¹⁾ 1995년 12월에는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경수로 협정을 타결 짓고 2년 후 1997년 7월 KEDO 현장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1998년 9월에는 1992년의 사회주의헌법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단행하게 된다.⁷²⁾ 특히 ‘김일성 유훈통치’의 헌법규범화 내지 제도화를 통해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일이 ‘김일성 유훈통치’를 헌법에 규범화함으로써 통치에 필요한 권위와 안전판을 확보해 나가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 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형식상이나 ‘집단지도체’를 채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후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한다.⁷³⁾

발표논문집으로 발간된 『北韓法 40年과 그 動向』, 고려대학교 개교 85주년 및 법학연구소 설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고려대 법학연구소, 1990.10.12~13)은 북한법 40년의 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뒤를 이어 한국발명특허협회의 『북한 산업재산권법』⁷⁴⁾과 법제처에서 북한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설명을 『北韓法制概要』⁷⁵⁾을 통해 기존의 북한법을 개괄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평가를

71) 이 법은 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차)되었다.

72)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을 다시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하였다.

73) 이 법은 19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되었으며, 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314호로 수정보충되었다.

74) 한국발명특허협회, 『북한 산업재산권법』(한국발명특허협회, 1991).

75) 法制處, 『北韓法制概要』, 法制資料 제157집(法制處, 1991).

받았다. 그 밖에도 『北韓의 合營法制』,⁷⁶⁾ 최종고의 『북한법』,⁷⁷⁾ 『北韓法 體系와 特色』,⁷⁸⁾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⁷⁹⁾ 박정원의 『北韓法律用語分析(Ⅲ)－民事法 編』⁸⁰⁾ 장명봉의 『北韓法 50年, 그 動向과 展望』⁸¹⁾을 통해 북한법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때이다.

이 시기에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연구분석도 이루어졌다. 전홍택·오강수, “남북경협 관련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⁸²⁾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명순구 교수의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⁸³⁾ 논문은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金庠均 판사는 “北韓의 司法制度”⁸⁴⁾ 논문 발표를 통해 북한의 사법제도의 궁극적 증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성호 교수는 “남북한 간의 형사법적 문제－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⁸⁵⁾ 논문을 통해 범죄인 인도문제 해결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김상용 교수는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 문제를 어떻게

76) 한국법제연구원, 『北韓의 合營法制』(한국법제연구원, 1992).

77) 최종고, 『북한법』(서울: 博英社, 1993).

78) 세종연구소,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79) 법원행정처,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법원행정처, 1995).

80) 박정원, 『北韓法律用語分析(Ⅲ)－民事法 編』(한국법제연구원, 1997).

81) 장명봉 외, 『北韓法 50年, 그 動向과 展望』(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82) 전홍택·오강수, “남북경협 관련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統一經濟』, 1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83) 명순구,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北韓法研究』, 제3호(北韓法研究會, 1999).

84) 金庠均, “北韓의 司法制度,” 『人權과 正義』, 통권 제231호(대한변호사협회지, 1995).

85) 제성호, “남북한 간의 형사법적 문제－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법조』, 제43권 8호(통권 제455호, 법조협회, 1994).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北韓의 土地制度和 統一後의 改編方向”⁸⁶⁾ 논문을 발표하였다. 남궁영 교수는 “북한의 경제특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⁸⁷⁾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나·선경제자유무역지대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고찰로는, 성재호 교수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국제법 이론을 통한 북한의 91인권연구”⁸⁸⁾ 논문이 있다.

이 시기에는 과거 1960~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 연구논문의 실적이 약 300% 많이 배출되어⁸⁹⁾ 비교적 북한법 전반에 대해 왕성한 연구활동을 보여준 때라고 할 수 있다.

(4) 2000~2009년까지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권 붕괴로 외교기반이 위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외교적 고립 상황에 직면하자, 체제유지를 위해 냉전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거부 등 이른바 ‘벼랑끝 외교(brinkmanship policy)’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유도, 마침내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86) 김상용, “北韓의 土地制度和 統一後의 改編方向,” 『現代理念研究』, 제8집(建國大學校現代理念 比較研究會, 1992).

87)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統一經濟』, 12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88) 성재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국제법 이론을 통한 북한의 91인권연구,” 『北韓統一研究論文集(VI)』(統一院, 1991).

89) 북한법에 관한 연구논문 실적 건수는 1960~1970년대 125건, 1980년대 110건, 1990년대에는 332건 조사되었다.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합의서’를 이끌어냄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 2001년 1월 출범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북한의 핵 변화 여부와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를 강조하는 등 강경입장을 견지했다.⁹⁰⁾ 한 마디로 2000년대에는 신지역질서가 태동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들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관련 경쟁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때이다. 이 시기 북한은 선군중심의 사회주의법제를 건설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즉 북한은 침체된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2002년부터 금강산관광지구법·개성공법지구법 및 각 하위규정(시행령) 제정은 물론 원산지명법, 상표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관련 법규제정 및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등을 수정·보충하는 등 각종 대외개방법령을 재정비를 통해 경제회생을 꾀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자 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의 법제화, 활성화를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일부 개정하는 등 법제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범무는 남북관계 및 북한의 법제분야 변화와 관련하여 1991년 『통일법 기본자료(I)』를 발간한 이래 세 번의 수정·보완판을 내었으며, 2007년에는 최근의 북한법에 관한 많은 변화를 반영하여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⁹¹⁾를 발간하였고, 2008년에는 그간의

90) 이하 북미관계 등 북한의 대외관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2007 북한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68~10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남북관계 진행 상황 및 남북합의서, 남북통일방안의 변천, 남북교류협력관계의 발전 상황 등 남북관계 관련 전반에 걸친 법제도적 부문들을 총정리하여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⁹²⁾를 발간하였다.

이 시기에는 다각도에서 북한법을 분석하였는데, 김동한 교수의 “북한에서의 법학의 동향과 법학자들의 연구실태”⁹³⁾ 발표논문은 북한의 법학자들의 연구 상황과 실태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김도균 교수는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⁹⁴⁾을 통해 북한법의 체계를 개념 지었으며, 윤상도 판사는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⁹⁵⁾ 논문을 통해 북한법이 남한법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최은석 박사는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⁹⁶⁾ 논문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 법제적 관점에서 서술하였고, 장명봉 교수는 “중국의 2004년 헌법개정: 배경·내용·평가”⁹⁷⁾를 통해 북한 헌법의 미래를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효원 교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⁹⁸⁾ 논문으로 베트남 헌법의

91)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법무부, 2007).

92)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법무부, 2008).

93) 김동한, “북한에서의 법학의 동향과 법학자들의 연구실태,” 제105회 북한법연구회 월례연구발표회(2006.5.25).

94)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 『法學』, 제46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95) 윤상도,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北韓法研究』, 제10호(북한법연구회, 2007).

96) 최은석,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統一問題研究』, 제19권 제2호(平和問題研究所, 2007).

97) 장명봉, “중국의 2004년 헌법개정: 배경·내용·평가,” 『북한법연구』, 제7호(북한법연구회, 2004)

98)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북한에의 시사점을, 김성욱 박사는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비교·검토”⁹⁹⁾ 논문을 통해 현 북한사회의 사회일면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조성국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비교고찰”¹⁰⁰⁾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실질적 이해를 도왔다. 김일수 교수는 “북한의 「자금세척방지법」의 의의와 평가”¹⁰¹⁾ 논문을 발표하여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구책으로 제정한 돈세탁 관련 입법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특히 북한이 2002년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리고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지정을 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어느 분야보다 경제특구와 관련한 연구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논문을 소개하면, 박환일의 “개성공업지구 내 담보활용방안 연구”,¹⁰²⁾ 장명봉의 “북한의 개성특구법제에 관한 법적 고찰”,¹⁰³⁾ 유욱의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의 내용과 개성공단법제에 주는 시사점”,¹⁰⁴⁾ 이철수의 “북한 노동법의

(한국법제연구원, 2005).

- 99) 김성욱,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비교·검토,” 『2006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법제처, 2006).
- 100) 조성국,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비교고찰,” 『북한법연구』, 제7호(북한법연구회, 2004).
- 101) 김일수, “북한의 「자금세척방지법」의 의의와 평가,” 제115회 북한법연구회 월례연구발표회(2007.3.29).
- 102) 박환일, “개성공업지구 내 담보활용방안 연구,” 『북한법연구』, 제6호(북한법연구회, 2003).
- 103) 장명봉, “북한의 개성특구법제에 관한 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324호(대한변호사협회, 2003).
- 104) 유욱,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의 내용과 개성공단법제에 주는 시사점,”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2005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집(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05.11.18).

변천과 전망 및 과제”¹⁰⁵⁾ 논문 등이 다수 발표되었다.¹⁰⁶⁾

(5) 북한법에 관한 연구실적 현황

북한법에 관한 연구실적의 성과를 숫자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본 연구팀이 조사한 북한법과 관련한 연구실적을 보면, 1969년부터 1979년까지 발간된 단행본은 66건, 연구논문은 125건으로 모두 191건이 발표되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발간된 단행본은 35건, 연구논문은 110건으로 모두 145건이 되었으며,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발간된 단행본은 86건, 연구논문은 332건으로 모두 418건이 발표

<표 3> 북한법에 관한 연구실적 현황표(연구실적 성과: 학위논문 제외)

연대별	구 분	단행본(A)	연구논문(B)	총 건수(C)= (A)+(B)
1969~1979년까지		66	125	191
1980~1989년까지		35	110	145
1990~1999년까지		86	332	418
2000~2009년 현재까지		156	328	484
합 계		343	895	1,238

105) 이철수, “북한 노동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북한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북한법연구회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대회(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09.4.30).

106) 본 연구의 범위 기간(2009.10.31) 이후 연구발표된 북한법 연구실적을 간략히 소개하면, “개성공단외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2009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09.12.17);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북한법연구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10.11.8) 등이 북한법 연구에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되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간된 단행본은 156건, 연구 논문은 328건으로 모두 484건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통일부 창설 이후 40년간 발간된 북한법 관련 단행본은 모두 343건이었으며, 연구 논문은 895건으로 모두 1,238건이 발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괄목할 만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법 관련 단행본이 과거에 비해 약 200%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연구논문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약 300% 정도의 연구 성과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법에 대한 자료의 접근의 용이성이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북한법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의 저변 확대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여진다. 향후 전반적으로는 북한법에 대한 연구의 관심과 호응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법 연구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1) 1970~1979년까지

1907년 이후 1979년까지는 북한 법제 분야의 학위논문 연구 성과가 별로 없다. 넓게 공법에 포함되는 헌법, 행정법, 형사법 분야에서 각 1~3편씩 석사학위논문이 있고 사회법 분야에서 교육제도와 노동법과 관련된 석사논문이 각 한 편씩 있다. 박사논문으로는 북한법 연구의 선구자인 최달곤의 “북한헌인법 연구: 소련법이론, 전통적 가족제도 및 조선로동당의 정책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¹⁰⁷⁾가 유일하다.

107) 최달곤, “북한헌인법 연구: 소련법이론, 전통적 가족제도 및 조선로동당의 정책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1975).

(2) 1980~1989년까지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북한 법제 분야의 학위논문 연구는 양적으로 많아지고 분야별로도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1980년대 발표된 박사논문 중 헌법 분야에서 장명봉, 장석권, 소진운, 신광휴 등 4편이 있으며, 형사법 분야에서도 한 편이 발표되었다. 석사논문은 헌법, 행정법, 형사법 분야 같은 공법은 물론 경제법, 사회법 분야에서도 각 3편이 발표되었다. 휴전협정을 다룬 석사학위논문이 두 편 제출되었고, 북한의 해양법을 다룬 석사학위논문도 발표되었다.

(3) 1990~1999년까지

북한법 학위논문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양적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한다. 박사논문도 헌법, 행정법, 형사법 같은 공법뿐만 아니라 민사법, 경제법, 사회법, 토지법 등 다른 영역까지 범위가 확장된다. 경제법 분야의 박사논문으로는 1998년 안성조의 “북한 외국인투자기업법의 체계론적 연구”(경기대)가 당시 선구적인 것으로 발견된다. 민사법 분야 연구는 가족법 연구(황무임, 박현선)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헌법 분야는 5편이나 발표되어 여전히 당시에도 북한 법제 연구자들의 제1관심 영역이 헌법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법 분야 석사논문은 각 분야별로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민사법 분야에서도 매매법(최성경)까지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상황이 반영되어 북한의 경제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 시작되었다. 사회법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교육제도,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많다. 이는 특수대학원들에서 당시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4) 2000~2009년 10월까지

2000년대는 북한법 학위논문은 1990년대부터 양적으로 대폭 증가된 발표 추세가 더 심화되었다. 각 분야별로 더 다양하게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세부적인 영역까지 관심이 확대되었다. 상사법 분야의 박사논문(최상철)이 최초로 나온 사실을 특기할만하다. 법학과가 아닌 북한학과에서 북한법제 관련 박사논문이 발표(정순원)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¹⁰⁸⁾

북한법 석사논문 분야에서는 2000년대에 1990년대와 비슷하게 양적으로 풍부하게 발표되었으며 관심 범위도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부분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법 분야에 대한 학위논문 생산이 많았는데,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5) 북한법 연구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실적 성과

학위논문(석사·박사)의 연구실적 성과를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앞의 현황표를 보면 북한법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은 1970년대에 1건,¹⁰⁹⁾ 1980년대 5건, 1990년대 16건, 2000년대 12건으로 현재까지 모두 34건이 파악되었으며, 석사학위논문은 1960~1970년대에 8건, 1980년대 20건, 1990년대 108건, 2000년대 119건으로 현재까지 모두 255건으로 파악되었다.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합하여 시대별로 보면,

108) 근자에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도 법조인 등이 북한법 관련 석사학위논문을 배출하고 있으며, 2010년 1학기부터는 ‘법·행정 전공’이 신설되어 향후 북한법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배출이 예상된다.

109) 1969년 1건의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어 이를 1970년대에 포함하였다. 1969년 이전에는 박사학위논문은 국내에서 1편도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부득이 1970년대에 포함하였음을 알린다.

<표 4> 북한법 관련 학위논문(석·박사)의 연구실적 현황표(논문건수)

연대별 \ 구 분	박사학위논문(A)	석사학위논문(B)	총 논문건수(C) =(A)+(B)
1969~1979년까지	1	8	9
1980~1989년까지	5	20	25
1990~1999년까지	16	108	124
2000~2009년 현재까지	12	119	131
합 계	34	255	289

1960~1970년대 9건, 1980년대 25건, 1990년대 124건, 2000년대 131건으로 총 논문건수는 박사학위논문 34건, 석사학위논문 255건으로 모두 289건으로 파악되었다.

앞의 연구논문들과 같이 1990년대 이후 연구성과물들이 다량 양산되었듯이 석·박사 학위논문에서도 연대별 구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⁰⁾

4. 북한법 연구성과(연구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 북한법 연구논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1970~1979년까지

이 시기에는 ‘대외경제관계법 분야’와 ‘경제특구법제 분야’ 관련 연

110) 앞의 <표 3> 북한법에 관한 연구실적 현황표(연구실적 성과: 학위논문 제외) 참조.

구논문이 전혀 없다. 이 시기는 아직 북한이 대외경제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시기이며, 또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을 하고 있지 않은 때이다. ‘북한연구방법론 및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분야를 비롯하여 다른 부문의 분야들은 남북 간이 냉전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연구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980~1989년까지

이 시기에는 정부부처인 통일부와 법무부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에서 북한법의 통치기구, 사법제도, 형사법, 민사법, 국제조약, 노동법 등 각 분야를 골고루 연구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토지법제 분야’에는 관련 연구논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토지법제 분야’는 앞의 1960~1970년대에는 4건 정도 연구실적이 있었던 데 비해 이 시기에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아쉽다.

(3) 1990~1999년까지

이 시기는 과거에 비해 전반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헌법 분야’와 ‘인권 분야’로의 연구의 편중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민사법 분야’와 ‘대외경제관계법 분야’에서도 과거에 비해 상당한 연구실적을 나타낸다. 기타 조세제도와 관련한 연구도 일부 연구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실적 면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4) 2000~2009년 현재까지

이 시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에서 북한연구와 통일연구에 큰 힘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법 부문에서도 많은 전문가와

신진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연구실적을 쌓게 되었다. 북한법 관련 단행본도 1990년대 시기에 비해 약 200%에 이르는 연구성과를 보였는데, 1990년대에 발간된 단행본은 86건인 데 비해 2000년대에는 156건의 연구실적을 보였다. 다만, 연구논문의 실적은 1990년대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쉽게 생각된다. 참고로 1990년대에 발표된 연구논문은 332건인 데 비해 2000년대에는 328건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연구실적이 저조한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 2002년 금강산, 개성 등 경제특구의 설정으로 연구자들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경제특구법제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법이론 분야에서는 오히려 연구가 저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 북한법 석·박사 학위논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북한법 학위논문 부문의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분야별로 첫째로, 양적 편중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기본법 분야를 기준으로 할 때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헌법 분야가 민사법 분야의 약 200%, 형사법 분야의 약 300% 많은 논문 건수를 보인다. 석사학위논문을 살펴보더라도 헌법 분야가 민사법 분야와 형사법 분야보다 약 200% 정도의 많은 논문 건수를 보이고 있다.

둘째, 기본법 분야와 다른 법 분야를 비교할 때 전자보다 후자의 연구 결과물이 훨씬 많아 양적 편중성이 심각하다. 헌법, 형사법, 민사법 등 기본법 분야보다는 경제법, 교류협력법, 토지법 등 특수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지나치게 많아 편중성을 보인다.

학위논문 부문의 북한법 연구에서 향후 이러한 양적 편중성이 극복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향후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예비 연구자들이 북한법 연구에서 법학의 전 분야별로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성과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을 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경우 특수대학원체제로 인한 논문의 생산이 많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1) 박사학위논문

북한법을 연구한 박사학위논문 부문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석사학위논문에 비해 절대적인 건수에서 뒤진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박사학위논문의 생산이 석사학위논문의 생산보다 더 긴 시간과 노력의 투여를 통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북한법 본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높이 다루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때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예비 연구자들의 절대적 관심 고조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연구주제 면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곳까지 관심을 표한 석사학위논문과 달리 박사학위논문은 각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짚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준비 과정과 연구의 깊이 등 박사학위논문이 석사학위논문과 당연히 구별되는 차별성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 연구를 시작하는 석사과정의 연구자들의 관심이 박사과정까지 이어져서 다양하고 질 높은 연구성과가 축적될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특히 이 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북한법 전공으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곳은 국민대학교가 유일한데, 다른 대학도 북한법 전공 과정이 설치되고 이를 정부가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석사과정을 마친 연구자들이 계속 박사과정까지 이어 연구를 함으로써 석사학위논문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자적 관심을 확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북한법 분야의 석사학위논문 중 단행본으로 발간된 우수한 연구성과물에 대해 사후적 포상과 장학 제도를 마련한다면 석사학위과정을 마친 연구자들이 박사과정까지 고민을 확장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박사학위논문 부문의 북한법 연구의 몇 가지 과제를 큰 틀에서 언급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인 양적 건수의 증강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주제 면에서 구체적인 지점까지 고민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학계의 연구 성과를 광범히 흡수하여 조문 소개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2) 석사학위논문

북한법 석사학위논문 부문의 연구를 살펴보면 법학의 분과별로 다양한 연구가 충실히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법 전반의 특징이나 본질적 성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

는 총론적 연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의 북한 법 연구는 박범영(“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의 청산: 과거 북한의 국가적 불법행위 청산을 중심으로”),¹¹¹⁾ 이해정(“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중심으로”),¹¹²⁾ 권영태(“북한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¹¹³⁾ 등 최근 학위논문에서 시도되고 있다. 물론 북한법 분야의 총론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양적인 면에서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하겠다.¹¹⁴⁾

둘째, 민사법 분야의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북한의 민사법 분야 연구는 여전히 가족법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가족법 분야는 일찍이 1970년대 중반 북한법 연구의 초창기부터 많은 연구가 되었다. 특히 최달곤은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거장이 자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북한 가족법 분야의 연구 성과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족법과 함께 북한의 민사법제에 대한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다. 북한 민사법제의 연구는 향후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소유권제도를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인

111) 박범영, “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의 청산: 과거 북한의 국가적 불법행위 청산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2)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3) 권영태, “북한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14) 북한도 이제 대중용 법전을 발간하는 등 자신들의 법제도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학계의 연구 또한 많은 성과가 쌓여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북한법 연구에서 보인 각 부문의 연구성과가 깊어지는 것과 함께 총론적으로 북한법 전반의 특징이나 본질적 성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총론적 연구가 제출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에 거시적 시각에서 북한법을 고찰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연구성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학위논문 부문의 북한법 연구의 과제는 큰 틀에서 지적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법 전반의 특징이나 본질적 성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총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법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법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법률가 및 유사 법률가제도에 대한 연구와 법 부문을 담당하는 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1) 정부 차원에서의 법제도 부문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

통일대비 법제도 부문의 연구는 주로 북한의 법제와 남북한의 통일 법제가 주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간 법제도 부문의 연구는 법무부, 법제처, 통일부,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주된 기관이며, 법제 연구 학회로는 북한법연구회가 주류를 이룬다. 그 밖에도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¹¹⁵⁾와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도 법제도 부문을 간헐적으로 논하고 있다.

115)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인권문제 중 북한인권도 함께 다루어 왔다.

오히려 관련 부처인 통일부보다 법무부와 법제처에서 더 적극적인 연구성과를 보여 왔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실무 검사를 비롯하여 연구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여러 권의 북한법 관련 단행본을 발간해왔다.¹¹⁶⁾ 물론 다량의 발간물은 아니지만, 내실 있는 연구서를 발행해 옴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여기에서는 관련 부처가 통일대비 남북한 법제에 관한 비교와 법제통합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다만, 북한법 전문가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연구 범위는 폭 넓게 접근하고 있으나 연구필진의 제한된 인력 풀(POOL)로 인해 연구성과는 실질적이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러나 정작 관련 부처인 통일부는 이러한 시도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통일부는 2000년대 초 신진연구자의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을 발간한 바 있으나, 근자에는 이마저도 중단된 듯하다.

또한 관련 부처 중의 하나가 외교통상부인데, 외교통상부에서는 법제도 부문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하다. 북한법 관련 학술 행사조차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관련 연구용역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북한법 관련 연구보고서도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2) 법제도 부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 북한법 부문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해결

116) 법무부는 2010년부터 『통일과 법률』 저널지를 매 분기별로 발간하면서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에 힘쓰고 있다.

되어야 할 것인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관련 부처는 신진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싱크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과거 진행되었던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부활하거나 재정비하여 법제도 부문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 부처 또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법제부문에 대한 전담 연구부서인 ‘통일법제연구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통일법제연구지원센터’에는 분야별로 북한법제팀, 경제특구법제팀, 남북교류협력법제팀, 체제전환법제팀, 통일법제팀 등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부문의 연구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법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장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전문 법률 연구팀인 ‘경제특구법제 전문연구팀’(가칭)은 현 남북 간의 상황으로 보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북한법 연구는 통일법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통일은 상대방의 존재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단순히 통일법 차원의 연구는 지양되어야 하며 북한의 법제도 이해를 전제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법 연구와 통일법 연구의 연계성을 갖게 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법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영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남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따라서 관련 법제 연구의 성과물을 영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문 전문 사이트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공감대와 연대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 접수: 10월 27일 / ■ 채택: 11월 26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구진, 『北韓 社會主義憲法 研究』(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1977).
_____, 『北韓法の 研究』(서울: 박영사, 1975).
국토통일원, 『南北共同聲明과 北韓의 法的地位』(국토통일원, 1972).
_____, 『南北韓 分斷解消의 法理論』(국토통일원, 1981).
國土統一院, 『북한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國土統一院, 1970).
김기선, 『南北韓 法制度의 比較分析 -南北韓 私有財産制度를 中心으로』
(발행처 미상, 1970).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한국학술정보, 2009).
김창순, 『북한 15년사』(서울: 지문각, 1961).
김철수, 『北韓憲法과 共產諸國의 憲法과의 異同에 關한 研究』(국토통일원,
1978).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남윤악, 『北傀 兇刑事關係 法令集 整備』(국토통일원, 1970).
박길준,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 및 북괴 국제 상거래법의 특징』
(국토통일원, 1971).
박동운, 『북한통치기구론』(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박상철, 『북한법을 보는 방법』(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박정원, 『北韓法律用語分析(III)-民事法 編』(한국법제연구원, 1997).
_____, 『北韓法律用語分析(III)-民事法 編』(한국법제연구원, 1997).
법무부, 『北韓法 研究(IV)-民法』(법무부, 1987).
_____, 『北韓法 研究(V)-國際條約』(법무부, 1987).
_____, 『北韓法 研究(VI)-勞動法』(법무부, 1987).
_____, 『北韓法 研究(I)-統治機構·司法制度』(법무부, 1985).
_____, 『北韓法 研究(II)-刑法』(법무부, 1985).
_____, 『北韓法 研究(III)-刑事訴訟法』(법무부, 1986).
_____, 『統一法務 基本資料』(法務部, 2000).
법원행정처,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법원행정처, 1995).
법제처,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법제처 행정법제국, 2005).

- 法制處, 『北韓法制概要』, 法制資料 제157집(法制處, 1991).
- 서울대 법학연구소, 『북한의 각종 법령 폐지에 따른 한국법령의 보완 및 문제점과 대책』(서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69).
- 세종연구소,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신영호 외, 『北韓法律文獻目錄과 그 解題』(近思出版, 1998).
- 윤세창, 『北傀 行政法規 첫 問題點과 그 對策』(국토통일원, 1970).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2008).
- 이명수, 『朝鮮婚姻法』(東京: 宗文館書店, 1966).
- 이영준, 『北傀 첫軍事法첫研究』(발행처 미상, 1970).
- 이장희 편저, 『北韓法 50年, 그 動向과 展望』(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 장명봉 외, 『北韓法 50年, 그 動向과 展望』(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 장명봉 외,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동향』(한국경제연구원, 2001).
- 장명봉 편저, 『최신북한법령집』(北韓法研究會, 2008).
- 장명봉,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북한법제 정비동향』, 통일부 연구보고서(통일부, 2001).
- 정경모·최달곤, 『北韓法令集』 제1~5권(대륙연구소, 1990).
- 차낙훈·정경모, 『북한법령연혁집(I)』(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 최종고, 『북한법』(博英社, 1996).
- 최종고, 『북한법』(서울: 博英社, 1993).
- 한국발명특허협회, 『북한 산업재산권법』(한국발명특허협회, 1991).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령용어사전(II): 형사법편』(한국법제연구원, 2003).
- 한국법제연구원, 『北韓의 訟營法制』(한국법제연구원, 1992).
- 『2007 북한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독일통일백서』(통일부, 1994~2000).
- 『北傀法令集』(중앙정보부, 1974).
-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統一院, 1989~1996).
- 『北韓法 40年과 그 動向』, 고려대학교 개교 85주년 및 법학연구소 설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0.10.12~13).
- 『北韓法 50年·그 動向과 展望』(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北韓法令集』, 제1권~제5권(大陸研究所, 1990).
-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Ⅰ)－헌법편』(韓國法制研究院, 1995).
-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民事關係法』(法務部, 1992).
-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Ⅱ)－刑事關係法』(法務部, 1993).
- 『北韓法制關聯文獻目錄集』(한국법제연구원, 1993).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통일부, 2000).
- 『북한의 지하자원법제』(한국법제연구원, 1996).
-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 1996~200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 2004.7~2005.12』(평양: 법률출판사, 2006).
- 『통일 관련 법, 제도 정비 및 구축 방안』 자료집(명지대 북한연구소, 2004).
- 『통일백서 2009』(통일부, 2009).
-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법무부, 2008).
-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법무부, 2007).
-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법무부, 2007).

2. 논문

- 장구진, “北韓刑法의 分析的 研究,” 『北韓法律行政論叢』, 제2집(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73).
-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통일과 평화』, 창간호(2009).
- 곽승지,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한울아카데미, 2007).
- 國土統一院, “北韓의 法務行政 實態와 強弱點 分析”(國土統一院, 1986).
- 國土統一院, “北韓의 治安行政의 實態와 強弱點 分析”(國土統一院, 1986).
- 國土統一院, “北韓의 統治構造의 實態와 強弱點 分析”(國土統一院, 1986).
- 國土統一院, “北韓의 合營企業 關係法令集”(國土統一院, 1986).
- 권영태, “북한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권오승, “北韓의 經濟法,”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988).
- 金庠均, “北韓의 司法制度,” 『人權과 正義』, 통권 제231호(대한변호사협회지, 1995).
- 김갑철, “北韓의 ‘主體思想’ 本質解剖,” 『통일정책』, 제3권 3호(평화통일연구소, 1977).
- 김남식, “北韓勞動黨 第6次大會에 관한 研究,” 『研究論叢』, 제4집(國際問題調查研究所, 1981).
-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 『法學』, 제46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김동한, “北韓法制 40년,” 『高鳳論集』, 제4집(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
- 김동한, “북한에서의 법학의 동향과 법학자들의 연구실태,” 제105회 북한법연구회 월례연구발표회(2006.5.25).
- 김동한, “북한에서의 법학의 동향과 법학자들의 연구실태,” 제105회 북한법연구회 월례연구발표회(2006.5.25).
- 김명기, “북한의 경제수역선언과 서해5도,” 『北韓』, 제69호(북한연구소, 1977).
- 김명기, “서해5도의 법적 지위,” 『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23집(대한국제법학회, 1978).
- 김상용, “北韓의 土地制度和 統一後의 改編方向,” 『現代理念研究』, 제8집(建國大學校現代理念 比較研究會, 1992).
- 김성욱,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비교·검토,” 『2006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법제처, 2006).
- 김영휴, “北韓의 裁判制度에 관한 考察,” 『통일문제연구』(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1979).
- 김운용, “北韓의 憲法改正,” 『北韓』(北韓研究所, 1973).
- 김일수, “북한의 「자금세적방지법」의 의의와 평가,” 제115회 북한법연구회 월례연구발표회(2007.3.29).
- 김찬규, “국제법관점에서 본 북한군사안전지역,” 『국방연구』, 제20호(1977).
-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統一經濟』, 12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 도희근, “소련헌법상 법원의 지위와 기능,”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제18권 2호(1987).
- 명순구,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北韓法研究』, 제3호(北韓法研究

- 會, 1999).
- 박동운, “北韓共產政權憲法の 制定過程과 그 性格,” 『亞細亞研究』, 제6권 제2호(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3).
- 박범영, “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의 청산: 과거 북한의 국가적 불법행위 청산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일경, “北韓의 新憲法,” 國土統一院 편, 『國土統一』, 10월호(1973).
- 박정원, “韓國法과 北韓法,” 『韓中法制發展 및 北韓法制整備動向』, 韓國 國民大學校 法科大學 BK21 北韓法制研究事業팀-中國 人民大學 法學院, (2000.8.11).
- 박환일, “개성공업지구 내 담보활용방안 연구,” 『북한법연구』, 제6호(북한법연구회, 2003).
- 배중대,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北韓法律行政論叢』, 제7집(고려대 법학연구소, 1989).
- 성재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국제법 이론을 통한 북한의 91인권연구,” 『北韓統一研究論文集(VI)』(統一院, 1991).
- 안병영, “統一 및 北韓 研究의 方法論 評價,” 『통일정책』, 제3권 1호(평화통일연구소, 1977).
- 유욱,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의 내용과 개성공단법제에 주는 시사점,”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2005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집(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05.11.18).
- 윤상도,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北韓法研究』, 제10호(북한법연구회, 2007).
- 이장희, “共產主義分斷國憲法과 統一問題: 東獨憲法과 北韓憲法上 統一條項을 中心으로,” 『통일논총』, 제6권 2호(국토통일원, 1986).
- 이철수, “북한 노동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북한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북한법연구회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대회(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09.4.30).
-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한국법제연구원, 2005).
- _____, “北韓法律의 國內法的 效力: 개성공단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범위·한

- 계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편, 『法曹』, 제54권 제4호(2005).
-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장명봉, “南北韓의 法哲學·法認識의 差異와 北韓憲法의 體系的 研究”(통일원, 1982).
- _____, “북한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법연구회 편, 『북한법연구』, 제5호(2002).
- _____,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の 權力構造에 관한 考察,” 평화통일연구소 편, 『통일정책』, 제1권 3호(1975).
- _____, “Soviet憲法에 대한 概觀,” 국민대 법학연구소 편, 『법정논총』, 제1집(1978).
- _____,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에 관한 研究,” 『省谷論叢』, 제2집(省谷學術文化財團, 1980).
- _____, “北韓憲法의 研究－憲法認識·憲法秩序·基本權·權力構造에 관한 考察”(통일원, 1982).
- _____, “북한의 개성특구법제에 관한 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324호(대한변호사협회, 2003).
- _____, “중국의 2004년 헌법개정: 배경·내용·평가,” 『북한법연구』, 제7호(북한법연구회, 2004).
- _____, “북한의 최근 입법 동향,” 북한법연구회 편, 『북한법연구』, 제11호(2008).
- 전홍택·오강수, “남북경협 관련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統一經濟』, 1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 제성호, “남북한 간의 형사법적 문제－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법조』, 제43권 8호(통권 제455호, 법조협회, 1994).
- 조성국,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비교고찰,” 『북한법연구』, 제7호(북한법연구회, 2004).
- 최달곤, “北韓養子法－그 分析的 研究를 중심으로,” 『北韓法律行政論叢』, 제4집(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80).
- 최은석,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평화문제연구소 편, 『통일문제연구』, 제19권 제2호(2007).

A review & project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law since ‘Embryonic perio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from the 70s~)

Choi, Eun-Suk(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trends, problem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study on each area of North Korean law over the past 40 years since ‘the embryonic perio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1970s. That is to say,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consist in examining what we need to prepare for the future unification of Korea, besides the research direction & issues, by exploring how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unified Korea, along with the proceedings of the work.

The research on the law in North Korea has been made from a perception of the need for policy response, with the launch of the Board of National Unification (currently, Ministry of Unification). Accordingly, though the research on the law in North Korea was a realistic necessity,

it has been a relatively neglected area, as an academic research theme. However, recently,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progress made in the study of North Korean law.

It was not until in the 1970s that the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law began,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Yemen in the 1990, which had been a divided country, served as a momentum to do a practical research on it. The adoption of ‘6.15 Joint Declaration’ in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brought about the prime time for the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law and Unification law.

This research intends to comprehend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law through the periodic analysis of it, by classifying it into areas, issue, key words. First of all, the research proceedings will be examined by dividing the periods into the 1970s, 80s, 90s, the 2000s.

The demand for experts on the law in a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is very high.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legal infrastructure at government level by being equipped with legal team to support this professionally, not entrusting universities or civic groups with legal research. It is desperately needed to strengthen legal team now that it is 40 years since ‘the embryonic perio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Keywords: inter-Korean relationship, embryonic perio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North Korean law,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unification of Germany, unification of Yemen, legal infrastructure.